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77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신동욱 · 박준태 · 조배숙
구자근 · 최수진 · 강대식
유용원 · 주진우 · 안상훈
박상웅 의원(10인)

제안이유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시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 승인이나 개별 특별검사법의 개정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 인력 증원이 사실상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특별검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답변할 의무는 없어 국회가 특검 활동을 직접 점검·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특검제도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개

별 특별검사법이 수사기간·인원·보고·회계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연장·증원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특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함(안 제1조의2제1항).
- 나. 특별검사의 직무를 위한 인원의 정원 및 수사기간 연장의 절차 등이 법을 개정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의2제2항).
- 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 라. 특별검사의 직무를 위한 인원 증원의 의결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 마. 특별검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2조).
- 바. 비용지출과 수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법을 개정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률로 이 법과 달리 정할 수 없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정원
2.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보의 정원
3.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사관의 정원
4.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절차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2에 따른 인력 증원의 의결 절차
6. 제12조에 따른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한 사항
7. 제17조에 따른 비용과 활동내역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 중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를 “대통령과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정하여 3

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일 전에”를 “3일 전까지”로,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는 수사기간 만료 전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인원 증원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의 자격, 임명절차,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과 달리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정원
2.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보의 정원
3.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사관의 정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의결이 없으면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인력을 배치하거나 파견할 수 없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검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제17조 본문 및 단서 중 “대통령에게”를 각각 “대통령과 국회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 연장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u> <u>이 법은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u> <u>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u> <u>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u> <u>적용한다.</u> <u>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법</u> <u>을 개정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u> <u>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다</u> <u>른 법률로 이 법과 달리 정할</u> <u>수 없다.</u> <u>1. 제7조제4항에 따른 파견검사</u> <u>및 파견공무원의 정원</u> <u>2.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u> <u>보의 정원</u> <u>3.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사</u> <u>관의 정원</u> <u>4.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u> <u>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u> <u>절차에 관한 사항</u> <u>5. 제10조의2에 따른 인력 증원</u> <u>의 의결 절차</u> <u>6. 제12조에 따른 사건의 처리</u> <u>보고에 관한 사항</u>

제10조(수사기간 등) ①·② (생략)

③ 특별검사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생략)
<신설>

7. 제17조에 따른 비용과 활동
내역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10조(수사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대통령과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④ -----
-----3일 전까지-----한다. 이 경우 국회는 수사기간 만료 전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인원 증원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의 자격, 임명절차,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과 달리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u>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u> <u>1. 제7조제4항에 따른 파견검사</u> <u>및 파견공무원의 정원</u> <u>2.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u> <u>보의 정원</u> <u>3.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사</u> <u>관의 정원</u> <u>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의결이 없으면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인력을 배치하거나 파견할 수 없다.</u>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생략) <u><신 설></u>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특별검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답변하여야 한다.</u>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	제17조(회계보고 등) ----- ----- ----- ----- ----- ----- -----대

<u>통령에게</u>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u>대통령에게</u>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u>통령과 국회에</u>----- ----- ----- ---. ----- ----- ----- -----<u>대통령과</u> <u>국회에</u>----- ---.
--	---